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역사충절 관광자원화 사업 완료에 따라 도은 이숭인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역사충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안 제4조～제12조)
⑴ 휴관일, 시설 이용시간,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예약사항
⑵ 사용료 감면, 징수방법 등
⑶ 입장료 무료, 한옥체험시설 시설사용료 납부
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제16조)
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⑵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⑶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
라. 위탁운영(안 제17조～제22조)
⑴ 위탁운영 예산 지원
⑵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 가능
⑶ 위탁의 취소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9.13. ~ 10. 3.)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7063(2018. 9.11.)〕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1564(2018. 9.13.)〕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충절공원"이란 역사충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역사충절공원 내에 조성된 한옥 체험시설(동재, 서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역사충절공원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성주역사충절공원(이하 “역사충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일원으로 한다.

제2장 역사충절공원의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역사충절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역사충절공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한옥체험시설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역사충절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일) ① 역사충절공원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역사충절공원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휴관일로 따로 정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옥체험시설은 연중무휴로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역사충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역사충절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약) ① 사용자는 한옥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한옥 체험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

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참가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제8조에 따른 사용 예약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장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한옥체험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준수사항) 누구든지 역사충절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역사충절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역사충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3장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역사충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역사충절공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충절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장
2.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역사충절공원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4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역사충절공원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위탁자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역사충절공원의 건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①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충절공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위배 되거나, 위법·부당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상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중도 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주역사충절공원 시설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동 재	54.17㎡형 (5인기준)	1동/1일	150,000	100,000	1실
서 재	54.17㎡형 (5인기준)	1동/1일	150,000	100,000	1실

비 고

1.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8월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2. “비수기 주중” 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피해유형	보상 기준	비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 요금전액 환급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체험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직업·단체명		전화번호	
내용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사 용 료	원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체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주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한옥체험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개인및단체명		
허가내역	사용기간	
	사용목적	
	허가조건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수할 것
사 용 료		원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체험시설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직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면 제 종 류					
면 제 사 유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민간위탁자 선정 신청서

법인(단체,개인)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단체)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소 재 지			

법인(단체,개인)는 귀 성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주역사충절공원 위탁 운영사업 민간위탁자 선정 공모의 참여를 위해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관리위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개인)명 :
대 표 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허가증, 정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업계획서(자체서식) 1부

[별지 제5호 서식]

민간위탁자 연장 신청서

법인(단체,개인)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법인(단체)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소 재 지			

본 법인(단체,개인)는 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개인)명 :

대 표 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자체서식) 1부